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가합63903 판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변론 종결2020. 12. 22.

판결 선고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2항, 3항,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6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부동산은 '이 사건 순번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원 대여 등

- 1) 원고는 2015. 5. 28. 6촌 동생인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1억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 2) 그러나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0. 10.경 'D이 2015. 5. 28.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10. 16., 이자 및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7년 제1186호, 위 공정증서에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D은 위 공정증서상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작성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전등기

- 1) D의 아버지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D, 피고 B이 있다.
- 2) 망인의 상속인들은 D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피고 C가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피고 B이 이 사건 6 부동산을 각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 C는 2015. 7. 21.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10. 22. 이 사건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1,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원고와 D이 6촌 친척관계에 있고, 2015. 4.경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만나 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과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늦어도 2015. 10. 22.경에는 알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5. 4.경 망인의 사망사실 및 상속재산으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0. 22.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내역을 열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5. 10. 22. 무렵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제로는 각 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각 이전등기 신청서류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를 망인의 사망시로 임의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인 2015. 7. 21.경 및 2015. 10. 22.경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므로,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먼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인 2015. 7. 21.경 및 2015. 10. 22.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 이후에 등기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원인 일자이자 망인이 사망한 무렵인 2015. 4. 4.경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이 2015. 4.경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만나 친하게 되어 그 이후인 2015. 5.경 D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그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D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상속재산 분할협약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D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가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피고 B이 이 사건 6 부동산을 각 상속받고, D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D은 사업자금을 마련하면서 친형인 피고 B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가족들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피고 C가 상속받고, 일부만 피고 B이 상속받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록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인 D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라) 피고 C는 1947년생으로 고령이고 추후 피고 C에 대한 재산의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D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균분 상속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D의 상속 지분만큼 사해행위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만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피고 C의 재산이 상속 개시될 때에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없는 한 D이 다시 균분 상속하게 되어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해서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마) 이에 더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와 D의 상속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최정운

판사변이섭

별지